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하정철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Attorney's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Jung Chul Hah

Baekseok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of Law

요약 대한변호사협회는 2014년 2월 변호사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최근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보호되지 못하는 의뢰인외의 제3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비밀의 누설 이외 수집, 기록,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등의 각종 처리에 관하여 규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현재 변호사윤리장전이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고 있지 않은 가운데,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일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구체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가 문제될 수 있는 몇 가지 경우를 살펴본다. 해당 논의가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논의에 작으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주제어 : 개인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비밀정보,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

Abstract In February 2014 Korean Bar Association has amended Professional Ethics Code as to stipulate attorney's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hile existing Korean law and Professional Ethics Code has made attorney to keep client's confidential information, attorney's newly promulgated obligation has its meaning in that personal information of subject other than client is not protected through confidentiality rules, given that confidentiality obligation is interpreted to protect only client's information relating to representation. Moreover,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deals with not only disclosure and use of information, which confidentiality rules is about, but also collection and retention process, access to and correction and care of information and even destruction of information. Amid unprecedented theft of personal data in several national banks and other serious leakage reported recently, this paper is going to contemplate the scope and application of the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with hope to contribute to starting discussion on it.

Key Words : personal information, information relating to identifiable individual, attorney's duty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attorney's duty to protect confidentiality

* 본 논문은 2014년 백석대학교의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Received 14 April 2014, Revised 22 May 2014

Accepted 20 July 2014

Corresponding Author: Jung Chul Hah(Baekseok University)

Email: jchah@bu.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2014년 2월 24일 변호사 윤리 장전을 전면 개정하면서 제12조에서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의 보호에 유의해야 함을 규정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보도 자료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에 따라 개인 정보의 보호에 특히 유의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을 반영하여 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1].

그러나 그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효과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기존에 변호사법 제26조와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상의 변호사의 비밀 유지의무와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은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새로이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은 법무법인 등이 수입제한 규정에 위반되는 상황에 빠지는 것을 가급적 피하도록 제49조에서 수입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저장 등의 처리행위를 수반한다. 의뢰인의 상대방과 증인 등의 개인정보 등은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학설의 다수견해의 입장임을 감안하면 개인정보보호의무의 준수는 이들 제3자의 정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 밖에도 변호사가 의뢰인의 재산을 기록하는 경우도 많고 변호사가 사건의 수입을 위해 승소한 경험 혹은 자신의 의뢰인의 신원 등을 광고에 이용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러한 모든 활동이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와 관련한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이어서 개인정보보호의무가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 몇 가지에 대해 별도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 개인정보의 개념

2.1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대한변협이 2014년 변호사윤리장전에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였지만 개인정보의 개념이나 개인정보보호의무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입법취지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발효로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변호사윤리장전상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 개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는 생존한 특정 자연인(自然人)에 관한 정보로서 그 자연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인 한 개인정보로서 충족되고, 특정 자연인과의 관련성과 식별 가능성이 충족되는 한 그 정보의 성격, 내용, 형식 등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다.

이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내용, 해당 정보의 처리목적, 그리고 해당 정보의 처리결과 중 최소한 한 가지가 특정 개인과 관련성이 있으면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이 충족되고, 식별가능성은 대부분의 정보가 다른 정보와 결합해야만 특정인을 식별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결합가능성을 의미한다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2].

하지만 이는 자칫 개인정보의 개념을 지나치게 넓힐 수 있다. 우선 특정 개인과의 관련성은 해당 정보의 내용에서의 관련성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 내용 자체는 특정 개인과 전혀 무관한 것인데도 해당 정보의 처리목적 내지 처리결과가 특정 개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러한 정보까지 개인정보의 개념에 포함하여 보호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식별가능성을 정보의 결합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도 그 정보와 결합되는 다른 정보 그 자체만으로는 특정 자연인을 식별할 수 없을 것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개인정보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 만약 그렇게 새기지 않는다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결합가능한 모든 정보가 식별가능성을 충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전자서명법 제2조 제13호도 이와 유사하게 개

인정보를 “생존하고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일본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역시 개인정보를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된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조합할 수 있고, 그에 의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보처리 축적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개인정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별확인번호나 그를 확인하게 해주는 하나 이상의 요소를 참고함으로써 식별되거나 식별가능한 개인에 관한 정보로 구성된다. 개인이 식별가능함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신원확인을 이용가능하거나 정보처리의 책임자가 접근가능하거나 혹은 어떤 다른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고려할 것이 권고된다”고 정의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정의된 개인정보는 내용상 일반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생년월일 등의 기본정보), 가족정보, 교육/훈련정보,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동산정보, 소득정보, 신용정보, 고용정보, 법적정보(전과기록, 파산 및 담보기록, 구속기록, 이혼기록 등), 의료정보, 조직정보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3].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구분으로 민감한 정보와 민감성이 낮은 정보로 나누는 성격상 분류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개인의 인격적 요소와 관련 정도가 높은 개인 정보의 경우 민감한 정보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4]. 종교, 사상, 정치적 신념, 전과기록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물론 재산적 정보 중에서도 신용정보나 파산기록 등은 민감한 정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민감한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정도의 주의의무가 정보처리자에게 부과된다.

2.2 변호사윤리장전상 개인정보와 비밀정보의 관계

변호사법 제26조와 개정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개정 전에는 제23조)는 변호사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일부 견해는 이러한 변호사법의 비밀정보보호를

개별법령을 통한 개인정보의 보호로 이해하고 있다[5]. 개인정보 관련한 현행 법령들의 전체적인 규율구조와 관련하여 비밀정보의 보호를 개인정보 보호와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지만 완벽하게 맞는 진술이라고 볼 수는 없다.

변호사윤리장전이 양 의무를 별도의 규정에서 규율하고 있어 적어도 그 규정을 제정할 대한변협은 양 의무를 구별하고 있고, 학계도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논리적 근거로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신뢰관계를 형성·유지하고 변호사제도 및 대립적 당사자주의의유지·발전에서 찾고 있어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려는 개인정보 보호의무와는 그 보호범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이다[6].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와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비밀은 보호객체의 범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7]. 비밀의 개념과 관련하여서는 정보주체의 주관적 비밀에 한정하는 견해와 객관적 비밀에 한정하는 견해, 양 견해를 절충하는 견해로 나뉘는데, 우리 대법원과 학계의 다수 견해는 절충설에 따라 주관적 비밀과 객관적 비밀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을 요하고 있다[8]. 따라서 개인의 식별과는 무관한 정보라도 객관적·일반적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의뢰인에게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경우 의뢰인의 비밀에는 포함되는 반면 개인정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국한된다.

하지만 양 의무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하여 보다 중요한 차이는 해당 정보들이 적어도 개념상으로는 중첩될 수 있는 부분에서 발견된다. 가령 제3자의 비밀도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보호대상에 포함되는지와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인정된다는 다수 견해는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와의 충돌을 이유로 직무상 제3자에 대해 알게 된 비밀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고 한다[9]. 의뢰인을 위해서 증인을 면담하거나 각종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3자의 비밀정보를 알게 된 경우, 그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고 변호사의 충실의무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취지와도 부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변호사가 제3자의 비밀을 함부로 누설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 제3자의 비밀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신뢰보호가 아닌 제3자의 사생활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밀의 범주에 대한 학계의 다수견해에 따를 때 제3자의 비밀은 변호사의 비밀 유지의무에 기해서는 보호되지 못하고, 그것이 개인정보인 경우 개인정보보호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새겨야 한다. 즉, 변호사는 자신이 의뢰인의 업무를 대리하는 중에 취득하거나 알게 된 제3자의 비밀은 그것이 개인정보인 경우 개인정보보호의무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 밖에도 학계의 다수 견해는 의뢰인의 연령,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의 신상에 관련된 정보는 비밀의 범주에 포함시키지만 막상 가장 기본적인 개인정보인 의뢰인의 성명은 비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한다[10]. 그리고 개인정보는 살아있는 자연인에 관한 정보에 국한되다보니 죽은 의뢰인에 관한 정보와 법인 등의 단체 의뢰인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 죽은 의뢰인이나 단체 의뢰인의 정보가 의뢰인 측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고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공개되지 않기를 원하는 사항이라고 인정되더라도 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의 대상에는 포함되지는 않고 의뢰인의 비밀로서 보호되는 것이다.

요컨대 변호사의 비밀보호의무와 개인정보보호의무는 그 기본 취지와 제도의 목적이 다르고 양 의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차이가 있다.

참고로 미국의 ABA 윤리규칙(ABA Mode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은 우리나라의 변호사법이나 변호사윤리장전보다 적어도 문언 상으로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을 넓게 설정하고 있다. 즉 변호사법 제26조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것을 금하고,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반면에 ABA 윤리규칙 1.6조는 의뢰인의 사건 대리 및 관련된 정보(information relating to the representation)의 누설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2.3 변호사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가능범위

위에서 개인정보와 비밀정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변호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절차와 제한에 부합하면 항상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관련된 논의는 이 글의 3.2.2에서의 논의와도 관련이 있지만 개인정보와 비밀정보의 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여기서 논의한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상 개인정보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속한 경우에는 변호사는 당연히 제3자의 개인정보를 이용 내지 제공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정보주체인 제3자의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의 수사 및 공소의 제기 및 유지나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 등 중요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18조에 규정된 예외에 해당하면 변호사는 해당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당시 표명했던 목적과 달리 이용하거나 제공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지만 의뢰인의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예외에 해당하면 항상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는 신인관계 내지는 아주 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위임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충실의무를 지고 있어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개인정보가 동시에 의뢰인의 비밀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밀유지의무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비밀유지의무의 예외에도 해당해야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새기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된다. 따라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절차이외에도 변호사법상의 충실의무와 비밀유지의무에 위반 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이 허용된다고 새길 것이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의무와 비밀유지의무는 그 보호법익과 취지가 다르므로, 개인정보가 동시에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인 비밀인 경우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상으로 변호사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비밀을 공개하거나 이용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상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제공으로 인한 법적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새길 것이다.

3.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내용

3.1 현행 법률상의 개인정보 관련 규율 법령의 기본 체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국가마다 민간 부문과 공

공부문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통합형 입법주의와 공공 부문과 민간부문 또는 각 영역별로 구분하여 규율하는 구분형 입법주의로 나뉜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도 여러 법령이 산재해 있어 통합형 입법주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 일반법으로서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함으로써 기본적으로 통합형 입법주의를 택한다고 볼 수 있다[11].

물론 아직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는 못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련된 여러 법률들이 산재해 있다. 가령 공공부문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등이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부문도 영역별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다양한 법률들이 존재하여 정보통신분야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거래분야에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신용분야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 밖에 의료분야나 각종 전문직에 대한 법령에도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법률에 개인정보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그만큼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여러 분야에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만, 이들 법령들이 체계적으로 규율되어 있지 않아 서로 상충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이들 법률 사이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특별법, 신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 결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법령들이 통일성을 갖추어 규율되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

3.2 변호사윤리장전상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일반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도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와 일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포함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각종 의무가 변호사에게 적용되고 정보주체는 변호사나 법무법인 등에게 일정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

3.2.1 개인정보의 수집 절차 및 수집 범위의 제한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수집 시 그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밝히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변호사가 부담하고, 변호사는 의뢰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법률서비스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최소한의 원칙과 관련하여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이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변호사가 의뢰인 등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별도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환기하여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시 발생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3.2.2 개인정보 처리의 제한

그리고 변호사는 정당하게 수집된 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처리”는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사실상 개인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망라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던 변호사법과 기존의 변호사윤리장전 조문들은 비밀의 누설만 금하고 있었는데, 2014년 개정된 변호사윤리장전에서는 누설뿐만 아니라 부당한 이용도 금지하도록 문언이 개정되었다.

만약 변호사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밝힌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때에는 동의를 받기 전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한편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와 같은 특수한 개인정

보의 경우에는 그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보다 심각하여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별도의 처리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등과 같이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등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그리고 고유식별정보의 경우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 등을 받지 않은 경우 처리를 할 수 없고,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특히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문을 신설하여 2014년 8월 7일 이후 변호사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도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처리할 수 없게 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즉,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상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한 경우 등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경우 변호사는 개정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 채무를 지는 것은 물론이고,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시 5억원 이하의 과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4조의2).

3.2.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안전한 관리

변호사는 보유 중인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여 해당 방침을 정보 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내지 제30조). 그리고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확인하고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 이외의 자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경우 변호사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처리 목적 및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0조). 그런데 정보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그

와 같은 고지의무를 인정할 것인지는 법정책상 재고의 여지가 있다. 사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여러 가지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와중에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그 제3자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수집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할 것이고, 이는 정보주체가 변호사가 운용하는 자신의 개인정보파일에 접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UN의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에 의한 접근 원칙을 선포하고 있고,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APEC의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정보주체로부터 정보를 얻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를 일정한 시점에 정보주체에게 정보처리 목적, 정보의 수령인, 정보처리자의 신원, 정보의 열람권 및 수정요구권의 존재 등을 고지토록 하고 있다. 고지시기와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EU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은 개인정보를 기록하는 시점 또는 최초로 공개되는 시점이라고 하고 있는 반면, APEC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순간 혹은 그 이전이라고 하고 있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시 정보주체의 요구 없이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취득 즉시 정보주체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변호사는 구체화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을 넘어서 개인정보를 보유해서는 안 되고,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의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 자신이 보관 중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변호사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 주체에게 유출된 항목, 유출 경위 및 시점, 유출로 인하여 발행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변호사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 절차 및 피해 발생 시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4조).

3.2.4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변호사가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변호사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는 법률상 열람이 금지되거나 의뢰인을 포함

한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그리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정정을 요구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변호사는 해당 요구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변호사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3항).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정보가 전송되는 현지에서의 보안이나 기타 요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과 같이 개인정보가 전송되는 제3국에 개인정보보호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인도나 제3세계 국가들이 정보처리의 새로운 시장으로 부상하고,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외국 법무법인이 국내 법률시장에 진출하는 가운데 그와 같은 규제는 국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3.3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의 구체적 태양

3.3.1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의 수임방지 위한 사건 정보의 기록과 개인정보 보호

법무법인의 규모가 대형화하고 소속 변호사의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이익이 충돌되는 상황에 놓일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할 수 있다[12][13]. 더욱이 자본의 집중화가 고도로 심화되어 기업집단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 기업의 변호사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사의 변호사로 인정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14]. 이익충돌 법리는 위험성의 규칙으로 의뢰인의 변호사에 대한 신뢰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사법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와도 직결됨을 감안하면, 새로운 사건의 수임 여부를 결정하거나 경력 변호사를 영입할 때 이익충돌 법리의 적용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일부 국가의 변호사협회는 변호사가 의뢰인과 그 상대방, 그리고 의뢰인의 사건에 관한 기본 정보를 기록하여 보관토록 하고 있다. 가령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은 제59조와 제68조에서 각각 공동

사무소와 법무법인의 사건정보 기록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데, 이들 조문에 따르면 공동사무소의 소속변호사나 법무법인은 직무를 행할 수 없는 사건의 수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급한 사건의 의뢰인, 상대방 및 사건명의 기록 등을 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 대한변협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2014년 개정에서 제49조에 수임관련 정보의 관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직 국내의 많은 법무법인들이 그와 같은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이러한 변화는 환영할 만한 것이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변호사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는 보다 무거워졌다고 할 것이다. 비록 의뢰인의 사건 정보 기록은 기존의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로 이미 보호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의뢰인과 변호사간의 위임관계가 종료한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는 지속되는 것이지만, 변호사가 사건정보 기록을 유지할 경우 의뢰인의 상대방과 증인의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 정보 기록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 시 그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고, 동시에 변호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무거워질 수 있다. 특히 현행 변호사법과 변호사윤리장전은 수인의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이나 공동사무소의 경우 이익충돌법리의 적용과 관련하여 하나의 변호사로 보아 이익충돌법리를 확장하고 있으므로 법무법인 등은 이익충돌에 저촉되지 않기 위하여 수임관련 정보를 구성원 변호사들 간에 공유할 수 있어 법무법인 등에서는 그 정보의 보호에 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변호사법 제31조).

참고로 대한변협은 2014년 2월의 변호사윤리장전 개정 시에 법무법인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면서 법무법인 등 구성원변호사 및 소속 변호사 중 어느 한명이라도 수임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 등은 원칙적으로 그 사건을 수임할 수 없음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지만, 이미 이 원칙은 변호사법 제31조 제2항에 의해 법률로서 규정되어 있었다.

또한 법률사건은 최종적으로 종료되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종료 후에도 이익충돌법리의 적용이 문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정보의 기록은 그 기록의 목적상 보관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기록의 분실·유출 등의 가능성도 클 수밖에 없다. 수임

관련 정보의 관리 비용이 다소 들더라도 변호사와 법무법인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유이다.

3.3.2 변호사 광고와 개인정보 보호

변호사법은 제23조에서 변호사의 광고에 관하여 규제하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은 과거 변호사의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하는 입장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전환하여 금지되는 광고를 규정에 열거하고 있다[15]. 그 중 주된 것으로는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광고와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대한변협은 변호사법의 위임에 따라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이하 “광고규정”)을 두었는데, 광고규정은 광고매체, 광고의 주체, 광고방법 등 광고에 대한 규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 중 광고규정 제4조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제한을 두어, 동조 제8호는 “과거에 취급하였거나 관여한 사건이나 현재 수입중인 사건 또는 의뢰인(고문 포함)을 표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적절한 정보의 유통을 보장하되 자칫 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줄 수 있는 내용을 규제하기 위해 둔 것이다. 유명인이나 사회적 인물을 의뢰인으로 두고 있거나 과거에 위임계약을 맺은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이 자칫 변호사의 실력이나 전문성에 대한 정보를 왜곡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변호사법을 포함한 현행 법률이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허위·과장·오도 등 정보의 왜곡을 낳는 광고에 한하여 규제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다.

다만 해당 규정의 단서에서 명시하였듯이 의뢰인이 동의하거나, 당해 사건이 널리 일반에 알려져 있거나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 경우 등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의뢰인을 표시하는 광고가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을 비실명처리 등으로 표기하여 광고하는 것이 허용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비실명처리하면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지만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적시하거나 기타 광고 내용에 의하여 의뢰인이 특정되어 의뢰인

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6].

그리고 광고규정은 광고방법 등에 대해서도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에 따르면 변호사는 현재 및 과거의 의뢰인, 친구, 친족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팩스, 우편,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변호사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든 자신이 작성하여 보관 중인 개인정보파일을 활용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전자메일이나 우편 등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그리고 현재와 과거의 의뢰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사건 수입과 관련하여 전화를 하거나 방문하여 광고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만, 이 역시 의뢰인의 개인정보 제공시 의뢰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새겨야 한다. 개인정보 주체인 의뢰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자신의 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3.3.3 의뢰인 재산의 기록과 개인정보 보호

일본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 제38조와 미국 ABA 윤리규칙 1.15(a)는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재산을 관리할 때 의뢰인의 재산에 대하여 기록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 변호사윤리장전은 제24조에서 변호사가 예납금, 보증금 등의 금전 및 증거서류 등을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경우 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의뢰인 재산의 관리 절차나 방법, 특히 의뢰인 재산의 기록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있지는 않다.

물론 의뢰인의 재산을 변호사가 보관하게 되는 경우 변호사는 위임계약에 대한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의뢰인의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재산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의뢰인의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인 절차의 마련이 요구된다.¹⁾

그러한 제도적 접근의 첫걸음으로 변호사로 하여금

일본의 변호사직무기본규정이나 미국 ABA 윤리규칙처럼 의뢰인의 재산을 변호사의 재산과 분리하여 보관하고, 의뢰인의 재산 목록을 기록·유지해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산목록의 정확한 기재와 그 목록의 적절한 업데이트는 의뢰인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변호사의 선량한 관리의무의 준수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의무 위반의 심리적 저지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의뢰인의 재산, 특히 예금계좌 등을 기록하여 그 파일을 보관하는 것은 역시 변호사의 개인정보보호의무와 관련하여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 의뢰인의 재산에 대한 기재 자체가 민감 정보일 경우가 많고, 의뢰인의 주민등록번호나 성명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보관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해당 정보의 유출시 의뢰인에게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및 2차 피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은 의뢰인의 재산 목록을 포함한 각종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급히 마련하고, 고유 식별 정보를 암호화함은 물론 해킹 등으로부터 안전한 정보 보안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4. 결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의 경우 비밀 유지 의무를 지고, 많은 경우 그러한 비밀의 범주에는 민감 정보와 고유 식별 정보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가 포함되고, 사인(死人)이나 법인 등의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정보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의무의 신설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상정적인 의미밖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의무와 비밀유지의무는 그 제도의 취지와 정신이 다르고, 변호사가 직무상 취득하게 되는 의뢰인의 상대방이나 증인 등 제3자의 개인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의무로 밖에 보호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그 누설의 금지 이외에 정보를 수집하여 기록하고 그 기록을 저장, 보유, 가공, 편집하는 등 정보에 관한 처리 전반에 대한 규율이 행해진다는 점에서 비밀유지의무와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고유 식별정보의 암호화는 변호사가 보관 중인 각종 민감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고, 정보주체의 접근 보장은 자기 정보에 대한 자기 결정권 등 헌법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서 시대의 요청이라고 할 것이다. 변호사와 법무법인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Baekseok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4.

REFERENCES

- [1] Korea Bar Association: 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2_detail.asp.
- [2] Chang Bum Le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Bobmonsa, 2012.
- [3] Sung Joon Kim.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Civil Remedies*, *Civil Law Journal*, 20, 109-142.
- [4] Je-Hee Lee. *Study on Improvement of Private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Korea*. LLM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2009.
- [5] Jin An Choi, *Legal Ethics*. Sechang Publishers, 2012.
- [6] Ho Young Son.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ight of Civil Law*.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2006.
- [7] Sang Soo Lee, (2009). *The Theory and Application of Legal Ethics*, Sogang University Press, 2009.
- [8]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of Dec. 26, 2003, 2002Do7339 (Supreme Court of Korea).
- [9] Hyung Keun Chung, *Legal Ethics*. Parkyoungsa, 2013.
- [10] In Sup Han, *Legal Ethics*, Parkyoungsa, 2011.

1) 의뢰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징계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보고되고 있으며 징계사례집에는 명백한 횡령의 경우도 실리고 있어 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상수. 전계서(각주7).

- [11] Daekyeong Jeong, Comparative Study of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Privacy Information Basic Laws and Dedicated Organizations-.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Cryptology, 22(4), 2012..
- [12] Jung Chul Hah, Successive Conflicts of Interest: Comparative Perspective on Substantial Relationship Test in Korea and the U.S.. Korea University Korea Law Review, 71, 157-201, 2013.
- [13] Jung Chul Hah, Concurrent Conflicts of Interests: May a Lawyer Act Adversely to a Client on an Unrelated Matter?. Chosun University Chosun Law Journal, 20(3), 653-672, 2013
- [14] Jung Chul Hah, Who Is The Client for The Purpose of Conflicts of Interest?: Corporate-family Conflicts. Kangwon Natl. Univ. Kangwon Law Review, 41, 1117-1153, 2014.
- [15] Woong Kyu Kim, Legal Study on Advertisement: Comparative Perspective on Attorney's Advertisement in Korea and the U.S., Korean Public Law Association, 31(5), 47-70, 2003.
- [16] Hyu Sang Park, Legal Ethics. Fides Press, 2013.

하 정 철(Hah, Jung Chul)



- 2001년 2월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법학사)
- 2006년 5월 :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Georgetown Law Center)(법학석사 LLM-International Legal Studies)
- 2007년 5월 : 조지타운대학교 법과대학(Georgetown Law Center)(법학석사 LLM)
- 2010년 5월 : 에모리대학교 법과대학(Emory University School of Law)(법학박사 Juris Doctor)
- 2011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법정경찰학부 조교수
- 관심분야 : 법조윤리, 불법행위, 가족법, 언론의 자유 등
- E-Mail : jchah@bu.ac.kr